

「한-인도 CEPA」 체결의 법적 의의와 과제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I. 서론

II. 「한-인도 CEPA」 추진 경과

III.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1. 개요
2. 상품무역
3. 원산지
4. 서비스무역
5. 투자
6. 기타 양자간 협력

IV. 「한-인도 CEPA」에 대한 법적 평가 및 과제

V. 결론

I. 서론

한국과 인도는 지난 2006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인도 CEPA’)¹⁾의 체결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같은 해 3월 뉴델리에서의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2008년 9월까지의 총 12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올해 8월 7일 CEPA에 최종 공식서명하기에 이르렀

다. 이는 2003년 2월 역사상 최초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을 체결한 이래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협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우리나라²⁾와 다각적이고 선별적인 FTA 추진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온 인도³⁾ 간의 이해관계가 부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정기 국회 중 「한-인도 CEP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2010년 1월 1일자를 기해 발효를 목표로 동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8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인

- 1)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이란 자유무역협정(FTA)과 그 명칭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성격을 갖는 국가간 교역협정으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외에도 투자, 인력이동,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 「인도-싱가포르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등 기 체결한 양자간 교역협정에 FTA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한 예가 다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중인 「한-러시아 BEPA(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와 「한-MERCOSUR TA(Trade Agreement)」도 FTA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사실상 FTA 성격의 교역협정에 속한다(명진호,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9. 8. 1쪽). 이처럼 인도의 경우 타국과의 교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상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TA 명칭의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특수한 국내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는 무역수지만 성장자 국가로서, 특히 태국과의 FTA 협상 추진 과정에서 2004년 조기관세자유화(Early Harvest Program) 조치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이듬해부터 대 태국 무역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전환함으로써 인도의 국내 산업계 및 정계는 자국 정부의 대외 FTA 체결 추진에 강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인도 정부는 공산품 중심으로 교역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감이 강한 FTA 명칭을 포기하고 대신에 한국이나 싱가포르와 체결한 CEPA 또는 CECA 등과 같은 완곡한 명칭을 사용하여 공산품 중심의 FTA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인도의 이러한 FTA 체결협상 전략은 대내적으로는 FAT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공산품 중심의 FTA에서 탈피하여 경제협력 및 서비스교역을 중시하는 FTA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도 정부는 궁극적으로 모든 FTA 협상에서 공산품의 양허수준은 대폭 낮추는 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IT, 의료, 영어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적극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투자 및 기술이전 등의 부문에서는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이순철, “인도의 FTA전략과 한·인도 CEP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전문가 「풀」, 남아시아분과 세미나 발표자료, 2007. 9. 5, 5쪽). 이번엔 체결된 「한-인도 CEPA」 역시 이러한 인도의 FAT 체결 추진전략을 반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외교통상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FTA 추진정책, <http://www.fta.go.kr/user/fta_korea/policy.asp>(2009년 9월 17일 방문).
- 3) 최근 인도가 과거의 주변국 중심의 소극적인 대외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 및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 체결을 시도하거나 그에 관한 공동연구·논의를 하는 등 FTA 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역 확대를 강조하는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대외 경제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인도는 2000년 스리랑카와의 FTA를 필두로 2003년 태국, 2005년 싱가포르와 각각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 EU, ASEAN, 러시아, 호주 등과는 FTA 협상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낮은 수준의 「양자무역약정」(Regional Trading Arrangement: R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근래 동시다발적이며 다각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인도는 투자, 기술, 기타 비교우위 분야에 있어서 주요국과의 협력 확대를 유도하고 개방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적인 FTA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인도 정부는 제조업 부문은 취약한 반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부문에 있어서 경쟁력이 강한 자국 산업의 특징을 토대로 비교우위 분야를 강조하는 인도 고유 FTA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내의 마찰은 최소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인도가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의 특징으로는 대체로 i) 상품 개방 분야 및 범위 축소, ii) 투자 및 기술 협력 강조, iii) 인력이동 및 서비스협력 확대, iv) 에너지 및 자원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FTA 체결 정책에 따라 인도가 추진하는



도의 경우 서명 외에 추가적인 국내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가 국회의 비준동의 등 국내절차를 완료하면 발효가 가능한 상황이다.⁴⁾

이번에 체결된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BRICs⁵⁾ 국가와 체결에 성공한 최초의 FTA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의 거대시장을 경쟁국에 앞서 선점할 기회를 잡았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세계 제2위에 해당하는 11억 5천만 명의 인구, 구매력 평가 및 GDP 수준으로 볼 때 미국, 일본, 중국 다음의 세계 제4위의 매력적인 시장을 가진 신흥 경제대국으로서 장기적으로는 향후 중국보다 더 큰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주목한 일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중국 등도 인도와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에 앞서서 인도와 FTA를 타결함으로써 시장선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보호무역 성향이 강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낮아 FTA 협상에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국가로 꼽히는 인도와의 FTA 체결에 성공하여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더욱 주목되는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은 우리나라로서도 매우 귀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와의 FTA 체결을 통해 한-인도 양국간의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BRICs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교역, 투자,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

FTA는 대상국별로 투자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성격과 내용의 CEPA 또는 CECA에서부터 낮은 수준의 「양자무역약정」(RTA)이나 「특혜무역협정」(PTA)처럼 제한된 수준의 시장개방만을 허용하는 형태까지 다양하고 차별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체결에 성공한 「한-인도 CEPA」는 아시아와 연계한 발전정책이자 최근 인도 외교정책의 핵심전략이 되고 있는 이른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으로 불리는 대외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이 ASEAN 등과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는 등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는 「동방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 보다 전략적이면서도 선별적인 협력모델로 FTA 정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순철·최윤정, 「인도의 최근 FTA 정책 변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8-0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1. 31 참조).

4) 「한-인도 CEPA」는 양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간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외교통상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09-465호, 2009. 8. 26). 우리나라의 경우 타국과의 조약 체결시 정식 서명 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국내적으로 후속 발효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내각제 국가인 인도는 타국과의 조약 체결시 내각의 서명·승인과 상대방 국가와의 정식 서명만으로 별도의 국내적 후속 절차 없이 바로 발효요건이 완료되게 된다(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한-인도 CEP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제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9년 8월호(제158호), 2009. 8. 99쪽).

5)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 경제대국인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을 말한다.

함으로써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⁶⁾ 「한-인도 CEP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측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대체로 i) 신흥 거대시장 선점, ii) 수출증대, iii)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iv) 소비자 후생 증가, v) 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등이 거론되고 있다.⁷⁾

그러나 「한-인도 CEPA」로부터 당장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기대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대외 교역 가운데 인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직은 미미하고, 전체적으로 공산품의 양허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관세 인하 및 철폐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관세인하 속도가 더디며,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의 완전한 철폐가 아니라 인하로 단기간의 관세감축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 및 서비스 분야의 개방도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며, 특히 인도가 금융, 통신, 건설 부문 등을 개방하였으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없는 실정이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일부 서비스 전문인력을 상호 개방하는 데 합의했으나 그 개방 효과는 주로 한국시장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양국 모두 농산물보호에 민감하여 농산물개방이 이슈가 되었던 여타 FTA들과는 달리 농산물 개방수준을 매우 낮게 설정하여 민감품목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⁸⁾

이처럼 「한-인도 CEPA」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타결되어 그 개방과 자유화 폭은 대체로 미흡하고, 과거 공산품 양허 수준과 일정, 농업,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분쟁해결 등에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여타 FTA와는 달리 별다른 문제점이나 민감한 쟁점은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CEPA」는 몇 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인도의 경우 높은 관세수준과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시장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한-인도 CEPA」를 통해 이러한 무역장벽이 어느 정도 해소될

6)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앞의 자료, 99~100쪽;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 협상 결과,” 2009. 8. 6, 4쪽; 정무섭·박변순,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9. 8. 10, 1~4쪽·17쪽 참조.

7)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앞의 자료, 103~105쪽.

8) 명진호, 앞의 자료, 3쪽·12~14면·17쪽; 정무섭·박변순, 위의자료, Executive Summary, 1쪽·7쪽·9~10쪽 참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력이동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FTA 역사상 최초로 전문 인력시장을 개방한 「한-인도 CEPA」를 계기로 특히 IT, 경영컨설턴트, 엔지니어, 기초과학, 초중등 영어교육 등의 분야에서 인도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전문인력의 유입·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인도는 「한-인도 CEPA」에서 자국 FTA 최초로 완전한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자유화⁹⁾에 합의함으로써 대부분의 인도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 인도 투자가 개방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산의 간접수용 금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의 도입 등 선진적인 투자보호조치가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대 인도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한-인도 CEPA」는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체결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우호관계를 토대로 정치, 외교, 안보, 문화, 에너지,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로 협력관계를 확대 및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한-인도 CEPA」를 통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수출증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제도적 규제와 차별 개선 등 장기적이고 비가시적인 효과가 더 크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⁰⁾

요컨대, 「한-인도 CEPA」 최종 타결의 진정한 의미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양국간 경제협력·교류 및 이익의 확대를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양국간 교역의 투명성 제고, 전반적인 교역 및 투자 관계의 확대 및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국가경제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외 신흥시장 개척이 절실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거대 소비인구를 가진 고성장 신흥시장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인 점, 인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앞서서 인도와 FTA 체결에 성공함으로써 시장 선점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점 등은 「한-인도 CEPA」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¹¹⁾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이번에 체결된 「한-인도 CEPA」의 주요 협상 결과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최종적으로 합의·타결된 주요 협

9) ‘네거티브 방식’이란 CEPA 협정문에서 명시한 개방 불허용 분야 이외에는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상대방 국가 국민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앞의 자료, 101~103쪽; 명진호, 앞의 자료, 6~11쪽; 외교통상부, 앞의 자료, 1~4쪽; 정무섭·박변순, 앞의 자료, 15쪽 참조.

11) 정무섭·박변순, 앞의 자료, Executive Summary.

상 결과를 상품, 금융·서비스, 원산지, 투자 및 기타 양자간 협력 부문 등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 「한-인도 CEPA」가 갖는 법적 의의와 과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향후 또 다른 유사한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법적 경험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한-인도 CEPA」 추진 경과

한국과 인도 양국은 이미 2003년 12월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인도 공동위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과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oint Study Group: JSG)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시 FTA 추진 로드맵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단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확정하고, 같은 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순방을 계기로 양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CEPA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부·학계·재계 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JSG)의 설치에 합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05년 1월부터 다음해 2006년 1월까지 1년 여에 걸쳐 총 4차례의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특히 2005년 12월에는 「FTA 체결절차 규정」에 따른 국내공청회가 1차례 개최된 바 있고, 2006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공동연구그룹 회의에서는 양국간 CEPA 체결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1월 2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인도와의 CEP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결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내적 사전준비, 양국간 공동 합의 및 연구 등 양국간 CEPA 체결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의 성숙에 따라 2006년 2월 7일 인도의 압둘 칼람(Abdul Kalam) 대통령 방한시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CEPA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3월 중 인도 뉴델리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당해 합의에 따라 한국과 인도 양국은 같은 해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뉴델리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2008년 9월까지 한국과 인도를 오가면서 총 12차례의 공식 협상과 2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가졌는데, 2008년 9월의 제12차 협상을 통해 「한-인도 CEPA」는 실질적인 타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공식 협상절차를 마치고 난 후, 양국은 2008년 10월과 11월 2차례의 법률검토회의를 더 가졌으며, 협정문안에 대해서 2009년 2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의 가서명과 같은 해 8월 7일 한국 서울에서의 최종 정식서명을 거쳐 현재 한국의 국내적



절차 완료 여부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공식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표 1] 「한-인도 CEPA」협상 경과

기 간	내 용
2003.12.	양국간 무역과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 문제의 검토에 합의(인도 뉴델리)
2004.05.	한국측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인도를 단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확정
2004.10.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CEPA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에 합의(인도 뉴델리)
2005.01. ~ 2006.01.	총 4차례의 한-인도 CEPA 공동연구그룹(JSG) 회의 개최 및 한국측 국내 공청회 개최(2005.12)
2006.01.26.	한국측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인도와의 CEPA 협상 개시 결정
2006.02.07.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CEPA 협상 개시 공식 선언(한국 서울)
2006.03.23. ~ 24.	「한-인도 CEPA」 제1차 공식협상 개최(인도 뉴델리)
2006.05.10. ~ 12.	「한-인도 CEPA」 제2차 공식협상 개최(한국 서울)
2006.07.18. ~ 21.	「한-인도 CEP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인도 뉴델리)
2006.10.10. ~ 13.	「한-인도 CEPA」 제4차 공식협상 개최(한국 서울)
2007.01.10. ~ 12.	「한-인도 CEPA」 제5차 공식협상 개최(인도 자이푸르)
2007.04.03. ~ 06.	「한-인도 CEPA」 제6차 공식협상 개최(한국 서울)
2007.07.24. ~ 27.	「한-인도 CEPA」 제7차 공식협상 개최(인도 뉴델리)
2007.09.09. ~ 10.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한국 서울)
2007.10.31. ~ 11.02.	「한-인도 CEPA」 제8차 공식협상 개최(한국 서울)
2007.12.18. ~ 21.	「한-인도 CEPA」 제9차 공식협상 개최(인도 뉴델리)
2008.04.02. ~ 04.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인도 뉴델리)
2008.05.29. ~ 06.02.	「한-인도 CEPA」 제10차 공식협상 개최(한국 서울)
2008.07.29. ~ 08.01.	「한-인도 CEPA」 제11차 공식협상 개최(인도 뉴델리)
2008.09.17. ~ 18.	「한-인도 CEPA」 회기간 회의(인도 뉴델리)
2008.09.22. ~ 25.	「한-인도 CEPA」 제12차 공식협상 개최(한국 서울), 실질적 타결
2008.10.23. ~ 25.	「한-인도 CEPA」 법률검토 제1차 회의(한국 서울)
2008.11.05. ~ 08.	「한-인도 CEPA」 법률검토 제2차 회의(인도 뉴델리)
2009.02.09.	「한-인도 CEPA」 가서명(인도 뉴델리)
2009.08.07.	「한-인도 CEPA」 최종 정식서명(한국 서울)

자료: 명진호,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9. 8. 1~2쪽;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 협상 결과,” 2009. 8. 6. 7~8쪽; 외교통상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한-인도 CEPA, http://www.fta.go.kr/user/fta_korea/info.asp?country_idx=18 (2009년 9월 18일 방문)을 토대로 종합·재구성.

Ⅲ.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1. 개요

‘GATT 1994’ 제24조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지역경제공동체 또는 지역협정 형태는 세부적으로 i) 관세동맹, ii) 자유무역지대,¹²⁾ iii)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 위한 잠정협정(Interim Agreement)의 세 가지이다.¹³⁾ 그러나 GATT 규정의 일반적 의무로부터 예외적으로 면제되는 지역경제공동체의 경우 비차별주의에 입각한 다자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WTO법체제에 배치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결성·운영에 대해서는 일정한 통제메커니즘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GATT 1994’ 제24조는 일단 지역경제공동체의 결성을 허용하면서도 회원국 영역간의 “실질적인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대해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칙을 철폐하고,¹⁴⁾ 공동관세 및 기타 통상규칙을 자유무역지대의 결성 이전에 존재하였던, 상응하는(corresponding) 관세 및 기타 통상규칙보다 높이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¹⁵⁾ 지역경제공동체의 결성 또는 참가와 관련된 사실이나 정보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통고해야 하는¹⁶⁾ 등의 통제를 가하고 있다.¹⁷⁾ 이번에 최종 서명된 「한-인도 CEPA」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의 교역협정으로서 이러한 WTO법체제의 기본 틀 안에서 허용되고 이루어지는 지역경제공동체의 일종이므로 GATT의 관련 규정 및 WTO 법체제의 일정한 요건과 통제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한-인도 CEPA」 협정문은 서문(Preamble), 15개의 장(Chapter), 총 188개의 조문(Article)과 기타 분야별 다수의 부속서(Annex)¹⁸⁾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협

12) 자유무역지대란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칙이 회원국 제품의 회원국 영역간의 실질적인 모든 무역에 대해 폐지되는 2개 이상의 관세영역의 그룹을 말한다.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except, where necessary, those permitted under Articles XI, XII, XIII, XIV, XV and XX)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동조 제8항 b호. 한편, 여기에서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은 해당 영역과 기타 영역 간의 무역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독립관세 또는 기타 통상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영역을 말한다. 동조 제2항 참조.

13) 동조 제5항.

14) 동조 제8항 b호.

15) 동조 제5항 b호.

16) 동조 제7항.

17) 이상과 같은 FTA에 대한 ‘GATT 1994’ 규정상의 합법성요건과 WTO법체제의 통제장치 강화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최승환, 「국제경제법」(제3판), 법영사, 2006, 926~928쪽;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7, 579~589쪽 참조.

18) 상품무역, 원산지 규정과 절차, 서비스, 인력이동, 투자, 분쟁해결 분야.



정문은 서문, 제1장(일반규정 및 정의) 및 제15장(행정 및 최종규정) 이외에 상품 무역(제2장), 원산지규정(제3장), 원산지절차(제4장),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제5장), 서비스무역(제6장), 통신(제7장), 인력이동(제8장), 시청각 공동제작(제9장), 투자(제10장), 경쟁(제11장), 지적재산권(제12장), 양자간 협력(제13장), 분쟁해결(제14장)의 각 개별 분야에 대한 양국간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각 분야별로는 세부적으로 관세철폐 가속화 및 추가개방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 무역규제절차의 개시에 앞서서 상대국에 대한 통보 및 제로잉 적용 배제와 최소 부과원칙 규정(이상 상품무역), 원산지 결정방식의 완화 및 한국측 개성공단 제품의 특혜관세대우 인정(원산지), 출입국조치에 대한 포괄적 규제권(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자유화, 투자자산의 간접수용 금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이상 투자) 등 법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주의깊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한-인도 CEPA」를 통해 한국과 인도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나누어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상품무역

상품무역 부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양허와 관련하여 인도는 우리나라의 대 인도 총 수출품목 및 수출금액의 8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인도로부터의 총 수입품목의 93% 및 수입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합의하였다. 특히 인도는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금액의 7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부터 그 이후 8년간에 걸쳐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부터 그 이후 8년 또는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기로 약속하였다.¹⁹⁾ 이와 같은 양허수준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낮은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장기여서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관세철폐·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효과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기존 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고,²⁰⁾ 양국은 현재 수준 이상으로는 관세를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19) 이를 수출품목을 기준으로 하면 72%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1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게 된다.

20) 2007년 기준 비농산물 품목(non-agricultural goods)의 평균 관세율은 인도의 경우 11.5%, 우리나라의 경우 6.6%이다. WTO, World Trade Profiles 2008, <<http://stat.wto.org/CountryProfile/WSDBCountryPFView.aspx?Language=E&Country=IN>> 및 <<http://stat.wto.org/CountryProfile/WSDBCountryPFView.aspx?Language=E&Country=KR>>(2009년 9월 19일 방문).

관세의 철폐 및 인하에 따른 혜택이 적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도의 관세철폐·인하 대상 품목에는 우리나라의 대 인도 10대 수출품²¹⁾을 비롯해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대 인도 시장접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는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수출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및 엘리베이터도 양허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수출확대에 따른 이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양국 모두 공산품을 제외한 농수산물 및 임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해서는 민감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이들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의 FTA와는 달리 별다른 영향이나 이슈가 없는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되었다.²²⁾

한편, 양국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소 10일 전 상대방 국가에게 조사에 관한 통보를 할 것²³⁾과 반덤핑 관세조치의 종료 이후 1년간은 동일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금지할 것²⁴⁾에 합의함으로써 인도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사전 대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²⁵⁾ 또한 양국은 시장개방과 자유화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철폐의 가속화 및 추가개방을 위한 재검토 및 재협의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양허수준이 개선될 가능성도 확보되었다.²⁶⁾

3. 원산지

원산지 규정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는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또는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의 경우라도 일정한 요

21) 대 인도 수출금액 기준 42.1%에 해당.

22) 외교통상부, 앞의 자료, 1~2쪽;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앞의 자료, 101~102쪽 참조.

23) 「한-인도 CEPA」 제2.14조.

24) 「한-인도 CEPA」 제2.19조.

25) 인도는 관세장벽 이외에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대외 무역장벽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이다. 특히 인도는 2008년말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의 개시 및 조치의 발동에 있어서 세계 1위 국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 및 조치도 가장 많이 발동한 국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역구제 조치의 발동에 있어서 사전적 통제와 규율에 합의한 것은 대 인도 교역에 있어서 보호무역 수준을 낮추고 인도시장 내 우리나라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명진호, 앞의 자료, 7~8쪽·14쪽).

26) 「한-인도 CEPA」 제15.2조 규정에 따르면 양국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설립하여 새로운 양허 또는 쟁점을 검토(review)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하에서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원산지 일반기준을 채택하고,²⁷⁾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의 민감도를 반영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는 방식²⁸⁾으로 합의되었다. 이상과 같은 원산지 기준은 인도가 여타 국가와 체결한 FTA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인도 수출품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²⁹⁾

한편, 개성공업단지에서의 역외가공이 인정되어 일반적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개성공업단지에서 생산된 108개 품목들은 「한-인도 CEP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³⁰⁾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4년 6월 개성공업단지 사업 개시 이후 체결된 모든 FTA에서 개성공업단지 조항을 규정하는 데 성공하였다.³¹⁾

4. 서비스무역

「한-인도 CEPA」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서비스무역에 관해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우선 양국은 모두 서비스무역 부문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하개발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과 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서비스무역 부문의 양국간 개방·자유화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인도의 경우 의료, 통신, 에너지유통, 운송서비스 등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로 서비스 전문인력시장을 개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 사업서비스(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및 운송서비스 등 분야의 인도시장에 한국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금융서비스의 경우 인도가 CEPA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자국 내 우리나라 은행의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한 것은 외국계 은행의 자국

27) 「한-인도 CEPA」 제3.3조 및 제3.4조. 이때 일반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및 역 내 부가가치 35% 기준을 말한다.

28) 「한-인도 CEPA」 제3장 원산지 규정,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참조.

29)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앞의 자료, 103쪽; 외교통상부, 앞의 자료, 3쪽.

30) 「한-인도 CEPA」 제3장 원산지 규정, 부속서 3-나: 영역원칙의 예외, 교환각서(개성공업단지) 참조. 이상과 같은 규정방식을 ‘한-ASEAN FTA 방식’이라 한다. ‘한-ASEAN FTA 방식’이란 대상 품목수를 한정하고(인도의 경우 108개) 개성공업단지 생산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국내산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수입국에게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한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앞의 자료; 외교통상부, 상계자료).

31) 외교통상부, 앞의 자료;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앞의 자료. 다만, 「한-미 FTA」, 「한-EU FTA」의 경우 개성공업단지에 대해서는 FTA 발효 1년 후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세한 내용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내 지점 설치에 부정적인 인도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이끌어 낸 것이라 하겠다. 현재 인도가 서비스 부문에서 WTO에 양허한 수준을 감안할 때 이처럼 다수 분야에서 인도의 서비스시장이 추가적으로 개방된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³²⁾

우리나라는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초중등 영어보조교사 등 160여 개 분야에 걸쳐 서비스 전문인력시장을 인도에 개방함으로써 이들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인도의 서비스 전문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 및 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바탕으로 인도의 전문인력의 한국 내 체류 및 재입국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인도의 서비스 전문인력의 출입국조치에 관한 포괄적 규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전문인력의 대량 유입 및 불법체류의 확대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³³⁾

5. 투자

투자 부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은 인도가 체결한 FTA 역사상 최초로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분야만 명시하고, 그 외의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³⁴⁾ 이로써 인도는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산업 분야를 제외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등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방된 분야는 구체적으로 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 석유정제,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 및 비금속광물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전기기계 등 약 20개 분야에 이른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한-미 FTA」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방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이 투자 부문에 있어서 향후 대 인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이 확대·개선된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진적 보호장치도 마련됨으로써 인도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다양하게 개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대 인도 투자의 확대를 위한 여건이 확대·조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한-인도 CEPA」는 상대방 국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국유화 또

32)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앞의 자료, 102쪽; 명진호, 앞의 자료, 15면; 외교통상부, 앞의 자료, 2쪽.

33)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앞의 자료; 명진호, 앞의 자료; 외교통상부, 앞의 자료.

34) 「한-인도 CEPA」 제10.8조 비합치 조치 및 제10장 투자, 부속서 I·II(투자 유보안) 참조.



는 수용³⁵⁾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형태의 국유화 또는 수용³⁶⁾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상대방 국가 투자자의 투자보호를 강화하고 있다.³⁷⁾ 아울러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³⁸⁾의 채택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³⁹⁾ 이밖에도 이미 인도에 진출해 있는 투자뿐만 아니라 진입단계의 설립 전 투자까지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투자의 보호범위가 확대되었다.⁴⁰⁾

6. 기타 양자간 협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인도 양국은 각 부문별 개방 및 자유화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확대·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양자간 협력관계를 증진하기로 합의된 분야는 구체적으로 무역 및 투자 진흥,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중소기업, 인프라 및 운송, 시청각 콘텐츠

35) 수용(expropriation)이란 타인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강제적 접수'(compulsory takings)로서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민간기관이 이를 행하게 된다. 이에 비해 국유화(nationalization)란 사회적·경제적 체제변혁의 일환으로서 사유자산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국가 또는 공공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양자의 개념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자산에 대한 수용은 투자 접수국이 자국의 사회적·경제적 동지에서 취하게 되며, 일정한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산 및 자산권을 직접 탈취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통제하에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승환, 앞의 책, 839쪽.

36) 일반적으로 간접수용이란 수용에 버금가는 정도로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정부의 조치(measures tantamount to expropriation)를 말한다(정무섭·박변순, 앞의 자료, 9쪽, 각주 3).

37) 「한-인도 CEPA」는 상대방 국가 투자자의 투자는 직접수용뿐만 아니라 간접수용으로부터도 보호됨을 명시하였다. 여기서 「한-인도 CEPA」상 직접수용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수용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한-인도 CEPA」 제10.12조 수용 및 보상, 제10장 투자, 부속서 10-가: 수용 참조).

38)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나 국제연합(UN) 국제무역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정무섭·박변순, 앞의 자료, 9쪽, 각주 4).

39) 「한-인도 CEPA」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상대방 국가의 의무위반으로부터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다른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는 우선적으로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한 후, 분쟁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이나 중재를 위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또는 국제연합(UN) 국제무역법위원회에 당해 분쟁사건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인도 CEPA」 제10장 투자, 제3절 분쟁해결, 제10.21조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참조).

40)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앞의 자료, 103쪽; 명진호, 앞의 자료, 15~16쪽; 외교통상부, 앞의 자료, 3쪽; 정무섭·박변순, 앞의 자료, 8~9쪽.

츠, 섬유 및 가죽, 제약, 관광, 보건의료, 정부조달, 재생에너지자원의 13개이다.⁴¹⁾ 따라서 양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통적인 국가간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환경, 문화, 약학,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들 분야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이나 분쟁에 대해서는 「한-인도 CEPA」 분쟁해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무적인 개방·자유화 대상 분야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⁴²⁾

IV. 「한-인도 CEPA」에 대한 법적 평가 및 과제

2007년 4월에 최종 타결된 「한-미 FTA」가 협상 과정에서 숭한 논쟁과 갈등을 야기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 최종 타결·서명된 「한-인도 CEPA」의 경우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개방과 자유화 폭은 미흡하고, 양허수준도 낮게 합의되어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개방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양국간 민감한 부문이나 품목 등은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함으로써 특별히 검토해야 할 첨예한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에서 합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대규모 소비시장과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지닌 신흥 경제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내를 가지고 치밀하고도 장기적으로 대 인도 시장 진입 및 확대를 위한 규범적 토대로서 「한-인도 CEPA」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대 인도 통상환경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인도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증대와 함께 직접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도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체나 투자자에 대해서 「한-인도 CEPA」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홍보하고 인도의 관련 법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규범적인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BRICs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인 만큼 미국, 일본, 중국 등 인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인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규범적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장선점 효과를 제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협정의

41) 「한-인도 CEPA」 제13장 양자간 협력.

42) 「한-인도 CEPA」 제13.14조 분쟁해결 조항의 비적용.



조기발효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양국간 최종 서명까지 마친 협정문에 대해서는 인도의 경우 발효를 위한 국내적 후속절차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협정문의 비준안이 국회의 비준을 위해 제출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한-인도 CEPA」 내용이 특별히 불리할 것도 없는 만큼 국회비준 등 국내적 후속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함으로써 신속히 발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인도 CEPA」의 가장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가 타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최초로 국내 서비스 전문인력시장을 개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방대상 분야의 서비스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이들 인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관련 국내법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도에 대해서는 향후 CEPA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⁴³⁾ 이를 위해서는 인도의 CEPA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인도의 올바른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인바, 이때 특히 협정문을 통해 명문으로 마련된 협의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한-인도 CEPA」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경제적 교류·협력관계를 규율하는 FTA로서의 성질을 갖는 교역협정이다. 그러나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이라는 명칭이 의미하듯이 「한-인도 CEPA」를 통상·경제 분야 이외에 외교, 안보, 정치,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하기 위한 규범적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비동맹 제3세계 국가들의 주도국으로서 갖는 인도의 정치적·외교적 위상에 비추어 「한-인도 CEPA」 체결을 통해 비통상·경제 분야에까지 긴밀하고 공고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제3세계 국가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자간 협력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마련하여 협정문의 일부분으로 포함시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교류와 협력의 추진을 촉진케 한 것은 규범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인도 CEPA」는 인도와 유사한 자원부국이자 거대 신흥 소비시장으로서 폭발적인 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타 BRICs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와 유사한 사회적·문화적·정치적·경제적·역사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주변의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 및 이들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에도 커다란

43) 「한-ASEAN FTA」 사례와 같이 FTA 체결 상대국의 FTA 이행능력 부족으로 FTA 활용도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명진호, 앞의 자료, 24쪽).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도 CEPA」 협상 및 이행 기준이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과 우리나라 기업과 투자자의 시장진출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이자 소중한 경험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인도 CEPA」는 이들 국가와의 FTA 협상 및 체결에 있어서 시행착오는 최소화하고 효율성은 최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규범적 도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에 최종 서명된 「한-인도 CEPA」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양국간 환경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인도는 최근 경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인구의 급증, 급격한 도시 집중화 등으로 대기, 수질 등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무한 잠재력을 가진 환경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⁴⁴⁾ 따라서 이미 급속한 공업국가화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관리 및 기술 측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인도의 환경시장 진출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한-인도 CEPA」에서 양국간 환경협력 문제를 명시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환경산업 분야의 대 인도 진출을 위한 법적 교두보를 조금 더 확실히 해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한-인도 CEPA」는 현재 인도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종합하여 상호간에 합의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타결되었으리라 여겨지지만 환경협력에 관한 부분을 명시함으로써 환경문제에 관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관계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다.⁴⁵⁾ 특히 협정문의 ‘제13장 양자간 협력’ 부분에서라도 이에 관한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향후 협의메커니즘 등을 통한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이 점에 대한 개선을 기대한다.

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에 최종 타결·서명된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하였거나 타결 또는 협상 단계에 있는 타국과의 FTA에 비해 그 내용

44) 환경부, “조용히 다가오는 미래, 인도 환경시장,” 환경부 보도자료, 2006. 6 참조.

45)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다수의 FTA는 당사국간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에 조화되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FTA 본문의 일부분 또는 부속협정(side agreement)으로 환경협력협정을 따로 마련하여 포함시키고, 관련 협의 및 협력 기구로서 환경협의회 또는 환경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한-미 FTA」 ‘제20장 환경’ 부분 참조).



이나 범위,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미흡하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신흥 거대경제권 국가군인 BRICs 중에서도 그 잠재적인 발전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인도와 포괄적인 경제동반자관계를 구축한 것은 또 다른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인도 CEPA」를 통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앞서서 인도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자본이 또 다른 BRICs 국가 및 인도 주변의 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있는 규범적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국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고 대외적인 신흥시장 개척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한-인도 CEPA」는 그 활용 여하에 따라서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를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한편, 법적인 관점에서 「한-인도 CEPA」는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각종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고수·적용해 온 인도로부터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전 통보 등 사전적 통제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비관세 무역장벽의 극복·해소를 위한 규범적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인도와 유사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고 있는 타국과의 FTA 협상·체결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규범적 경험이라 할 것이다. 서비스무역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분야의 대 인도 진출 확대를 약속받았고, 인도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전문인력의 국내시장 유입을 확대함으로써 그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관련 분야의 국내경제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이와 관련된 국내법제도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투자 부문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투자 개방 및 자유화, 상대방 국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직접수용뿐만 아니라 간접수용의 금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선진적인 투자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 인도 투자의 활성화 및 투자 보호 효과를 제고한 것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인도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선진적 투자보호제도는 대 인도 투자의 확대를 위한 매우 유리한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의 이용 및 적용 경험은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와의 FTA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한-인도 CEPA」에 통상·경제 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교류·협력관계의 증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통상·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부분에서 양국간의 교류·협력

관계가 개선·강화됨으로써 이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지위 향상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상과 같은 성과와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인도 CEPA」의 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국내법적·국제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한-인도 CEPA 협상결과 및 기대효과,”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9년 8월호(제158호), 2009. 8.
- 명진호,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9. 8.
- 외교통상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제09-465호, 2009. 8. 26.
-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 협상 결과,” 2009. 8. 6.
- 이순철, “인도의 FTA전략과 한·인도 CEP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전문가 「폴」 남아시아분과 세미나 발표자료, 2007. 9. 5.
- 이순철·최윤정, “인도의 최근 FTA 정책 변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8-0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1. 31.
- 정무섭·박번순,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9. 8. 10.
- 최승환, 「국제경제법」(제3판), 법영사, 2006.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7.
- 환경부, “조용히 다가오는 미래, 인도 환경시장,” 환경부 보도자료, 2006. 6.
- 외교통상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FTA 추진정책, <http://www.fta.go.kr/user/fta_korea/policy.asp>(2009년 9월 17일 방문).
- 외교통상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한-인도 CEPA, <http://www.fta.go.kr/user/fta_korea/info.asp?country_idx=18>(2009년 9월 18일 방문)
- WTO, World Trade Profiles 2008, <<http://stat.wto.org/CountryProfile/WSDBCountryPFView.aspx?Language=E&Country=IN>> 및 <<http://stat.wto.org/CountryProfile/WSDBCountryPFView.aspx?Language=E&Country=KR>>(2009년 9월 19일 방문).